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66,805,753	26,004,173
일반회계	816,798,571	24,503,957
특별회계	50,007,182	1,500,215
기타특별회계	50,007,182	1,500,215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47,283,506	1,418,505
주택사업특별회계	172,830	5,185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134,846	34,045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246,600	37,398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9,400	5,082

제 2 조 2020년도 세입,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"세입,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3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, 직무수행경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지방채,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-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
-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,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재,개폐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.

제 9 조 최종추경 성립 후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간주 예산으로 처리하며 명시이월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